

在日韓國商工会議所와 米州韓人商工人總連合會간 協力議定書

在日韓國商工会議所(Korean Chamber of Commerce & Industry in Japan)와 米州韓人商工人總連合會(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, USA)는 所屬企業의 發展과 日本 및 米州地域과의 사이에 經濟交流 및 理解의 增進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協力議定書を 締結한다.

第1条 (目的)

이 協力議定書는 在日韓國商工会議所와 米州韓人商工人總連合會간의 交流와 理解를 增進하고 相互 業務協力에 관한 事項을 결정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.

第2条 (協力の 内容 및 範圍)

- 1) 在日韓國商工会議所와 米州韓人商工人總連合會는 各機關이 保有하는 日本과 米州地域의 貿易振興 및 經濟協力에 관한 情報를 相互 提供한다.
- 2) 在日韓國商工会議所와 米州韓人商工人總連合會는 各 機關이 施行하는 會議의 開催, 使節團의 派遣 및 영접, 米州 또는 日本地域에 進出한 企業에 대한 支援, 調査 및 研究, 研修등의 事業에 관하여 相互 協力한다.
- 3) 在日韓國商工会議所와 米州韓人商工人總連合會는 各 機關이 發行하는 刊行物 및 各種 資料를 相互 提供한다.
- 4) 在日韓國商工会議所와 米州韓人商工人總連合會는 所屬 商工会議所를 통하여 交流・協력이 增進되도록 相互 協助한다.
- 5) 在日韓國商工会議所와 米州韓人商工人總連合會는 所屬 企業에 대하여 상대방의 事業을 積極적으로 알림으로써 所屬 企業이 이를 活用할 수 있도록 한다.
- 6) 在日韓國商工会議所와 米州韓人商工人總連合會는 第1項 내지 第5項에 規定하지 아니한 事項에 관하여도, 이 議定書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한 事項에 대하여 상호 最大限 協力한다.

第3条 (費用의 負擔)

在日韓國商工会議所와 米州韓人商工人總連合會는 第2項의 協力を 위해 必要한 費用을 各自 負擔한다. 다만, 別途의 費用이 所要되는 경우 兩 機關이 協議하여 別途로 정한다.

第4条 (細部事項)

이 議定書를 實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細部事項은 兩 機關이 協議하여 別途로 정한다.

第5条 (有効期間)

이 議定書의 有効期間은 2年으로 한다. 다만, 有効期間 滿了日까지 어느 一方이 書面에 의하여 議定書의 變更을 要求하거나 解除하지 않는 경우 2年間씩 延長되는 것으로 한다.

第6条 (効力の 發生)

이 議定書는 兩 機關의 代表者 또는 代理人이 署名한 날 부터 効力이 發生한다.

第7条 (議定書의 保管)

이 議定書는 韓國語와 日本語로 각각 2部를 作成하여 相互 署名한 후 각각 1部씩 保管한다.

2009年 10月 28日

在日韓國商工会議所
會長 崔 鐘 太

米州韓人商工人總連合會
會長 鄭 周 炫